

1. 개정이유

'22년 ~ '23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'24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적근거 :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

나.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

지 역 별		지형별	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
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	시·구 (세종특별자치 시 읍·면·동)	산 지	65,730원/m ²
		산지외	48,770원/m ²
	군	산 지	56,510원/m ²
		산지외	41,960원/m ²
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	시	산 지	56,280원/m ²
		산지외	41,840원/m ²
	군	산 지	48,440원/m ²
		산지외	35,930원/m ²

다. 적용기간 : 2024. 1. 1부터 2024. 12. 31까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단위면적당 표준비용)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, 조사비,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.

지 역 별	지형별	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
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	시·구 (세종특별자치시 읍·면·동)	산 지 65,730원/m ²
		산지외 48,770원/m ²
	군	산 지 56,510원/m ²
		산지외 41,960원/m ²
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	시	산 지 56,280원/m ²
		산지외 41,840원/m ²
	군	산 지 48,440원/m ²
		산지외 35,930원/m ²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적용례)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·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
제3조(단위면적당 표준비용)			
지 역 별	지형별	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	
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	산 지	56,990	
		42,290	
	군	49,000	
		36,380	
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 자치도	산 지	48,800	
		36,280	
	군	42,000	
		31,160	
개 정 안			
제3조(단위면적당 표준비용)			
지 역 별	지형별	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	
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	산 지	65,730원/㎡	
		48,770원/㎡	
	군	56,510원/㎡	
		41,960원/㎡	
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 자치도	산 지	56,280원/㎡	
		41,840원/㎡	
	군	48,440원/㎡	
		35,930원/㎡	